

창원지방법원 2022. 2. 18 선고 2020가단1165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

담당변호사 김여련, 신정인, 추교식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형모, 이영은

변 론 종 결 2022. 1. 21.

판 결 선 고 2022. 2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 C에게 김해시 D 대 239㎡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, 15, 16, 17, 18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가’부분 1㎡ 지상 창고 및 잔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2. 원고(선정당사자)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2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 C에게 김해시 D 대 239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 중 별지

도면 표시 17, 16, 15, 2,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지상 창고 1㎡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, 위 선내 (가)부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 C(이하 ‘원고들’이라고 한다)는 2020. 7. 7. 이 사건 토지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2020. 6. 20.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들이다.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 김해시 E 대 235㎡ 지상에 무허가 창고(이하 ‘피고의 창고’라고 한다)를 소유하고 있다.

나. 피고의 창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, 16, 15, 2,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1㎡를 침범하고 있는데, 이후 피고가 창고 건물 벽면 일부를 철거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의 창고 및 잔해물이 별지2 감정도 표시 2, 15, 16, 17, 18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가’부분 1㎡를 침범하고 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호증의 1 내지 3, 갑 4, 12 내지 15호증,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축탁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, 15, 16, 17, 18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가’부분 1㎡ 지상 창고 및 잔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원고들은 피고의 창고건물 침범부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, 피고가 침범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, 침범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,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

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수연